##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380

발의연월일: 2020. 9. 1.

발 의 자: 박상혁 · 강준현 · 김윤덕

김정호 · 서삼석 · 오영환

이동주 • 이탄희 • 임오경

최인호ㆍ허 영 의위

(119]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함)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, 진흥원에 원장 1명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,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의 수립·추진 등에 관한 진흥원의 업무는 매우 전문적이고 분야도 다양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교통·금융·보험 및 법률 등 기존 분야의 전문가외에도 의료, 자동차정비 분야 등의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행 이사회의 구성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이사회 정수를 현행 9명에서 13명 이내로 증원하여 이사회에 자동차손해배상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진흥원의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 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9조의5).

#### 법률 제 호

#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5제1항 중 "8명"을 "12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9명"을 "13명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3 9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증원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를 위 촉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9조의5(임원 등) ① 자동차손	제39조의5(임원 등) ①
해배상진흥원에 원장 1명, 이사	
장 1명을 포함한 <u>8명</u> 이내의	<u>12명</u>
이사, 감사 1명을 둔다.	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이사회는 원장, 이사장, 이	6
사로 구성하되, 그 수는 <u>9명</u> 이	<u>13명</u> -
내로 한다.	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